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1856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1856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2 선고 2021가소1298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 피항소인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고경선, 전선행

변론종결 2024. 7. 4.

판결선고 2024. 9. 1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2. 선고 2021가소12988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47,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4.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8,972,923원, 피고 C, D, E은 각 4,247,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1.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한 원금 청구를 감축하고, 피고 E에 대한 원금 청구를 확장하였으며, 각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402,130원, 피고 C, D은 각 1) 676,239원, 피고 E은 4,247,0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1.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C, D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상속지분 3/11)와 자녀인 피고들(상속지분 각 2/11)이 있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6. 1. 6. 망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로서 I조합에 대한 19,639,366원(이자비용 7,226원 포함)의 대출채무가 있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천안시 서북구청은 2017. 6. 1.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등으로 3,266,770원(= 취득세 2,946,480원 + 농어촌 특별세 177,940원 + 지방교육세 142,35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14.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세액을 납부하였고, 등기비용으로 452,550원을 부담한 다음 원고 3/11지분, 피고들 각 2/11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보유한 위 3/11지분에 관하여 2017. 6.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7. 6. 28. 망인 명의의 I조합 계좌에 위 19,639,366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그리하여 2017. 7. 2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 19,639,366원을 전액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켰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5/11지분을, 피고 C, D, E이 각 2/11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은 없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인바, 위 19,639,366원에서 피고 B은 5/11만큼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1만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재산 관련 세금 및 등기비용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 공과금 3,266,77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 452,550원 합계 3,719,320원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로서는 각 상속지분인 2/11에 해당하는 676,240원(= 3,719,320원 × 2/11)씩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가 망인의 채무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까지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부분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원고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것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 D에게 유증한 재산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먼저 상속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위와 같은 사무 처리는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고(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1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지고 있던 망인이 2016. 1. 6. 사망한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이 그 법정상속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대출채무가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출채무 19,639,366원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그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5,356,190원(= 19,639,366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3자인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출연으로 자신들의 채무를 면한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대출채무가 유효하게 변제되어 소멸된 이익이 현존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각 3,570,793원(= 위 19,639,366원 × 각 2/11지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위변제 전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지분(3/11)을 증여하였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9,639,366원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 지분인 5/11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위변제 전인 2017.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11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11지분에 대한 위 증여가 피고 B이 그 대신 이 사건 대출채무액의 3/11만큼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부담부 증여라든지, 위 증여 당시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채무액의 3/11만큼을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11지분에 대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부지’로 증거의견을 밝혔), 설령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자기 지분을

증여하는 대신에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채무 중 3/1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 내지 인수한다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비록 위 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나 상속등기비용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을 피고 B이 대신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도 피고 B에게 각 비용의 2/11만큼만을 청구하였는바, 해당 기재조차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채무 부담액은 19,639,366원 중 각 상속지분 비율인 3/11(원고) 및 각 2/11(피고들)만큼이고, 피고 B이 원고의 채무분담액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이 사건 대출채무 상환기일은 2017. 6. 29.이었던 점, ② 피고 E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상환기일 전에 그 상환기일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망인의 상속인들 중 원고와 피고 B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원고는 위 상환기일 전 날인 2017. 6. 28. 망인 명의의 I조합 계좌에 19,639,366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채무가 전액 변제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④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채무의 부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을 갖게 된 점, ⑤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위 변제에 대해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들 또는 피고들이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할 당시 피고들이 원고의 변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 반대의사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5항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 징수금에 관하여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여기에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상속등기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위와 같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동상속인 모두가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상속등기비용 또한 위와 같은 상속등기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그것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들에게 불리하거나 피고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속등기비용 역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이 부분 비용 3,719,32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 등 3,266,770원 + 상속등기비용 452,550원)을 원고 혼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각 676,240원(= 위 3,719,320원 × 각 2/11지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상속 과정에서 지출한 위 비용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무관리자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서도 원고에게 그 상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의 단독 소유가 될 것이어서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 및 피고들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사무 처리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바²⁾,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이 지나 원고 및 피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이 불필요한 행위였다거나 원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망인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민법 제739조 제3항, 제1항 참조),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의 상속등기비용 대납행위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사무 처리로 인한 이익 즉,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를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등기비용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대위변제금 19,639,366원과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상속등기비용 3,719,320원 중 피고들 부담부분인 2/11에 해당하는 각 4,247,032원[= (19,639,366원 + 3,719,320원) × 2/1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12. 1.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일수, 판사 설승원, 판사 윤지숙

1) 원고는 2023. 12. 1.자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을 ‘공동하여’로 기재하였으나, 위 항소취지와 동시에 변경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고가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상속개시 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 제5-276호 등 참조).